

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출입기자
 발 신 참여연대 (사법감시센터 담당 :金星泰 간사 :723-5302)
 제 목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 판결에 대한 성명
 날 짜 1998. 6. 22. (총 2 쪽)

성명서

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비리변호사 처벌 "사건브로커 뒤에 비리변호사 있다"

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(소장 韓仁燮 · 서울대교수 · 법학)

1. 지난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각종 사건을 수임하면서 거액의 알선료를 뿌린 혐의로 구속·기소된 변호사 이순호(37)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,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. 즉,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대가성 알선료를 뿌린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돈을 제공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.
2. 법원이 아무리 실정법의 명문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죄형법정주의논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, 법원은 이로써 결국 비리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.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임을 둘러싸고 비리를 저질른 것이 어떻게 단순히 사무장만의 책임이 될 수는 없다. 비리브로커의 배후에는 비리변호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이다. 뿐만아니라 변호사자신은 변호사법위반의 일반적 주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변호사가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활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등 그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변호사법 제90조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.
3. 더구나 이 문제를 놓고 마치 검찰과 법원측이 권위의 대결을 벌이는 듯한 본말전도식의 모습

을 보인 것에 실망하지않을 수 없다. 검찰과 법원의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.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조문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법조계가 스스로를 개혁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다. 법조계의 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. 우리는 우선 법조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수임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즉각적인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. 변호사법에 처벌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"현행법으로는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를 처벌하기 어렵다"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아울러 "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"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으로부터 법조계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질 않길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. 끝.